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31376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6. 4. 3.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8.부터 2026.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8.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 등 설계, 제작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북 구미시 소재 사업장에서 가정용 전기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절삭가공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 B은 '2022. 12. 8.경 위 E 사업장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한 뒤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위 법원 2023고약713호 저작권법위반 사건),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12호증, 을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B이 무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 사용료 7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불법행위자인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6조, 제750조에 따라 위 손해 일부인 34,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 취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한 것은 E에 잠시 소속되었던 엔지니어이고 피고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E는 영세한 업체로 원고의 청구는 과도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이 E 사업장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E의 대표자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¹⁾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 사용료 74,000,000원을 위 규정에 따른 손해의 액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필요한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

1) 피고 C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피고 B이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들은 피고 C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2026. 4. 3. 자 변론조서 참조).



당한 금액이 74,0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이 사건 프로그램 그 중 가격이 10,000,000원인 F 모듈만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② 피고 B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부를 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전부를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③ E의 사업 내용이나 그 영세한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만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 B이 불법복제 후 사용을 자인하고 있는 F 모듈의 가격은 개당 10,000,000원(부가세 별도)인 점, ⑥ 피고 B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 기간(무단 복제가 이루어진 2022. 4. 30.경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날인 2023. 1. 10.까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가 이루어진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2. 12. 8.부터²⁾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²⁾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불법행위일이다.